
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
(김원이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13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2. 27.

발 의 자 : 김원이 · 서삼석 · 김승원  
이성윤 · 허 영 · 윤준병  
박수현 · 허성무 · 박지혜  
김남근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산하기관에서 정책자금 지원 및 대출받은 한 스타트업의 범죄사실이 의제화되었음. 해당 기업은 창업 후 10억 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았으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부한 혐의로 기업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음. 이 회사가 허위세금계산서를 토대로 산하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아낸 사실도 밝혀짐.

문제는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나 실행기관인 산하기관은 범죄사실을 확정판결 이후에도 인지하지 못하였고, 언론보도와 국정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해당 기업에 대한 제재를 결정하였음.

조세범죄나 횡령 등 주요 경제범죄는 국세청 및 경찰, 법무부 등과 적극적인 업무협조 및 자료공유 없이는 주무부처가 현실적으로 인지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.

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정책자금의 지원대상 자격 확인 및 부정수급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과세정보 등 조세 관련 자료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 및 처분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.

### 주요내용

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 자격 확인 및 부정수급의 예방·적발·환수 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조세관련 자료 및 확정판결 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(안 제28조의3 신설).

##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장에 제2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8조의3(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한 자료 요청 등)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 자격 확인 및 부정수급의 예방·적발·환수 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·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에 대한 조회·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.

1. 「국세기본법」 제81조의13 및 「지방세기본법」 제86조에 따른 과세정보 등 조세 관련 자료
 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범죄사실에 관한 확정판결 및 처분 결과에 관한 자료
  3. 그 밖에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
-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- ③ 중소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

제1항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, 해당 자료의 처리·보관 및 파기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른다.

④ 그 밖에 자료의 요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 행	개      정      안
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<u>제28조의3(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한 자료 요청 등)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 자격 확인 및 부정수급의 예방·적발·환수 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·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에 대한 조회·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u>1. 「국세기본법」 제81조의13 및 「지방세기본법」 제86조에 따른 과세정보 등 조세 관련 자료</u></li> <li><u>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범죄사실에 관한 확정판결 및 처분 결과에 관한 자료</u></li> </ol>

3. 그 밖에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

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제1항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, 해당 자료의 처리·보관 및 파기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른다.

④ 그 밖에 자료의 요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